

# 구 소련 극동한인(韓人) 강제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실상(實像)

朴 鍾 淳\*

1. 머 리 말
2. 한·러 국경형성과 러시아 한인 이주민 정책
3. 한인의 독립운동과 러·일 관계
4. 구 소련 제정 러시아의 한인 이주정책 계승
5. 중·일 전쟁과 한인 특별 이주
6. 특별 집단이주 시행과 신 거주지 수용실태
7. 이주민 생활대책과 이주 보상금 지급
8. 맺 음 말

## 1. 머 리 말

구(舊) 소련(蘇聯)시대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韓人)은 1937년 한·러 두만강 국경 지역으로부터 소련정부가 일본의 간첩침투를 차단한다

---

\* 역사학 박사(모스크바대 초빙교수 역임)

는 구실로 갑자기 삼엄한 무장호송 하에 겨우 생활도구 몇 가지만 챙겨 들고 허겁지겁 중앙아시아행 특별 이주열차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 소련 스탈린(Сталин И.В.) 정권의 한인 “특별이주” 정책에 대해 러시아 전 사회주의 연방 대통령 엘친(Ельцин Б.Н.) 시대에는 정치 탄압을 한 “강제이주”<sup>1)</sup>로 규정하고, 구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일부 소수민족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복권법(復權法)을 제정하였다.

그 후부터 러시아 한인계 사학자들을 비롯한 한국의 일부 학자들도 소련의 한인 강제이주를 앞다투어 비난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 이유를 크게 테마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인 강제이주는 스탈린의 독재체제하에 전체주의 공산정권이 만든 변질적인 탄압 정책이다.<sup>3)</sup>

둘째, 소수 민족의 탄압정책으로 한인이 그 최초의 대상이다.<sup>4)</sup>

셋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Узбекистан)과 카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의 황무지(荒蕪地)를 개간하여 농업의 활기와 노동자원의 부족을 메우려고 계획한 것이다.<sup>5)</sup>

---

1) 전 러시아 대통령 엘친이 “강제이주의 규정과 복권”이란 대통령령을 공포한 것은 소련 공산당의 폭정 사례를 폭로하여 중요성을 유발시켜 공산당을 붕괴시키고자 했으며, 또한 수많은 피해자와 인민으로 하여금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했던 정략적인 저의도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 하스불라토프(Хасбулатов Р.И.)는 당시 엘친의 민주화 정책을 입안한 절친한 동료로서 직접 강제이주를 경험했던 체츠냐(Чечня) 자치공화국 출신이었다.

2) 고르바초프(Горбачов М.С.) 소련 대통령 시대의 개혁(перестройка) 정책에 힘입어 러시아 한인계 학자 등이 1988-1990년에 한인의 전 거주지 귀환 등을 진정하였으나 각하(却下)되었다. 그 후 엘친(Ельцин Б.Н.) 대통령 때 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의장 하스불라토프)에서 1991년 10월 18일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대한 법령이 가결되었으며 한인 강제이주에 대한 복권법은 1993년 4월 1일 제정되었다.

3) В.Ф. Ли и Ким Ен Ун(리 블라지미르, 김영웅), Белая книга, Москва, 1992; Ким Г.Н., Мен Д. В.(김 게르만, 명 드미트리),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1995, с.9.

4)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관계와 변화』(서울: 국학자료원, 1999), pp. 116-136.

5) В.Д. Пак(박 보리스), Ариранг(아리랑), No. 21, 22, 23, Москва, 2002.

넷째, 국경지방으로부터 강제이주는 일본이 중·일 전쟁(1937년 7월)에 앞서 일본과 구 소련이 상호 두만강 국경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비밀히 합의한 전략적인 음모였다.<sup>6)</sup> 환언하면 일본이 소련을 침략하지 않는 대신 소련은 극동한인을 두만강 국경에서 멀리 이주시키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유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논리적 모순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강제이주를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병폐현상 만으로 보았으나 사실 미국도 일본과 태평양 전쟁 때 서부해안 지역 등에 거주하던 약 11만 명에 달하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으로 집단 강제수용한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sup>7)</sup> 게다가 스탈린이 극동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동기로 말한 극동 한인거주지에 일본 간첩침투 차단이라는 이주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 일본은 1910년 한·일 합병 이후부터는 러시아에 이주해 간 한인을 일본국민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한인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일본 영사관에 호소하였다. 특히 극동한인 중에는 976명이 직접 일본여권까지 소지하고 일본 블라지보스톡 영사관에 일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sup>8)</sup>

따라서 강제이주를 시킬 때 국적이 없었던 70%가 넘는 한인은 물론 소련 국적을 가진 한인도 일본은 일본국내법에 따라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한인 강제이주에 대해 소련주재 일본 대사관이 귀환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그런 항의에 대하여 구 소련정부는 출생지법과 거주지법

6) М.Н. Пак(박 미하일), русские корей ещы(러시아 한인들), No. 18, Москва, 2000.  
 7) Сим Хон Ёнг(심현용),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спект проблемы(제민족 강제 이주 : 문제의 국제적 측면)" Россия в XX веке,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20세기의 러시아 민족관계의 제문제), Москва, 1999, с. 382.  
 8)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이하 A ВПРФ), Фонд Референтура по Корею, Опись 21, Папка 186 Пор.17.

이 상충될 때 거주지법이 우선이라는 국제법을 들어 일본의 항의를 일축하였던 것이다.

둘째 유형은, 소수민족 탄압으로 한인이 최초 이주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구 소련의 소수민족은 한민족을 포함하여 140개 민족이 넘는다. 그 중 이주대상 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국경지방에 거주하던 친독(親獨)성 민족이나 친일(親日)성 민족 혹은 내륙의 친독성 민족으로 분류된 폴란드인, 한인, 몽골계의 칼므의크인(Калмыки), 크림(Крым) 반도의 따따르인(Татары), 체츠나인(Чечня=국명, Чеченцы=체첸민족), 아세틴인(Осетины), 유대인 그리고 볼가(Волга)강 중류에 거주하던 독일(獨逸)인 등을 포함하여 15개 민족에 이른다.<sup>9)</sup>

최초의 이주대상 민족도 독일군이 전 유럽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1930년대에 이미 폴란드 접경의 소련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1936년 4월에 구 소련방 가맹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와 백러시아(Белоруссия)의 국경인접 서부국경지대로부터 소개시킨 45,000명의 폴란드계 민족이었다.<sup>10)</sup>

극동 러시아 한인은 그 다음에 제2차로 중·일(中日) 전쟁이 1937년 7월에 발생하면서 8월에 이주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 앞서 말한 기타 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적성국가의 국경지방에 거주하던 민족이거나 독일군에 우호적인 협력을 제공한 친독(親獨)성 민족으로 구분하여 특별 집단이주를 시켰다. 그 중 한 민족은 지금도 내전이 종식되지 않은 체츠냐(Чечня)이다. 체츠나인은 유목부족 독립국가로 있었으나 18세기 뽀뜨르(Петр1) 대제(大帝) 시대에 남진(南進)정책을 감행하자 러시아에 100년이 넘게 저항을 해오다 끝내 강제 합병되고 말았다. 그런 체

9)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커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연구: 소련 강제이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1999, p. 209.  
10) Н.Ф. Бугай, А.М. Гонюв(부가이, 고노프),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СР, Нальчик, 2003, с.11.

츠나인이라 독립심이 강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군을 환영하였다. 독일은 광활한 소련 내의 길을 안내해 주는 대가로 승전후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바로 이런 사실로 체흐나인은 스탈린의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셋째 유형은, 농민만 이주시킨 것은 아니었다. 한인 이주 대열에는 극동 지방의 농민은 물론 어민, 직장인, 공산당원, 군인, 국경 수비대원 할 것 없이 한인이라면 예외를 두지 않았다.

넷째 유형은, 중·일 전쟁에 앞서 일본이 전쟁으로 한·러 국경 지방의 군사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극동한인의 독립투쟁이 두려워 소련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경지방에서 한인의 이주를 소련에 요청함으로써 소·일이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강제이주를 주소(駐蘇) 일본 대사관에서 소련 정부에 여러 차례의 항의한 사실, 그리고 당시 서울과 일본의 신문에서 강제이주를 소련 독재 공산당의 한인에 대한 탄압정책이라고 비난한 기사, 또 소련이 중국에 비밀리에 무기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아 소·일 간에 어떤 비밀협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가상적인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략 이상에서 살펴본 한인 특별이주에 대한 주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논문 혹은 신문 칼럼이다. 그 밖에 이주민의 비참했던 생활상은 직접 이주를 체험한 동포학자들과 일부 국내학자 그리고 TV와 신문에서 직접 취재하여 폭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주민 수송 도중 비위생적인 화물열차 안에서 45일이 넘는 생활로 환자가 발생해도 아픔을 호소할 수조차 없었던 삼엄한 경계로 수송 도중 사망한 병약자 수가 많았으나 미공개로 남아 있다.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에 있는 러시아 국립극동문서보관소(РГИА ДВ)의 문서목록에는 “한인 이주열차에서 사망한 인원”이란 문서가 있으나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 희생자가 있을 것으

로만 추측할 뿐 정확한 인원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 외에 소련의 한인 집단이주 동기는 물론 이주대책에 따른 수용예산과 중앙아시아로 이주지 선정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상태다. 특별 이주를 구 소련의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여 공산당의 폭정만을 폭로하고 혹은 피해 상황만 밝혀와 사실상 소련정부가 극동한인을 이주시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 알려지거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구 소련정부가 갑자기 시행하게 되는 극동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원인과 실상을 밝혀보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 2. 한·러 국경형성과 러시아 한인 이주민 정책

러시아에서 국경인접지역에 거주하던 한인을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제정 러시아 시대 1860년 한·러 국경이 형성된 이후 이민 초창기부터였다. 1858년 러시아는 청(淸)국과 아무르(Амур=흑룡강)강을 중심으로 북쪽 국경을 형성하게 되는 아이군 조약(Айгунский договор, 애훈(愛璦))을 체결하면서 바로 서·남쪽 국경을 한카(Ханка) 호수에서 두만강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였다.<sup>11)</sup>

그와 같은 연장계획은 당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던 영국(英國)이 극동 지방에서 항구를 물색하기 위해 1850년 전후 한반도 북부를 포함 우수리(Уссури)의 동해안 지방에 함대를 보내 여러 차례 조사한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영국에 극동지방에서 항구를 내어 주지 않으려고 청국의 봉금지대(封禁地帶)인 두만강(豆滿江)까지 국경선 확장을 계획했던 것이다.<sup>12)</sup>

11) И. Барсуков(바르수코프), Материалы для биографии, Москва, 1989, с.557;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이하 РГВИА), Фонд 400, Опись 4, Дело 101, Л. Л.1-5(선장 William Robert Broughton).

12) И. Носков(노스코프), Отношения русских к китайцам и корейцам, Москва, 1862, с.14-16.

이런 연유로 러시아는 1856년 연해주를 신설하고 청국과 1858년 아이군 조약에서 연해주 서남부 지방을 청국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1차 합의한 후 곧 서둘러 북경조약(1860)을 체결하여 1861년에 연해주 남·서쪽 국경에 'T'자(필자 주: 말뚝을 세운 장교의성(Трубин)의 첫 약자) 표시 말뚝을 세워 구 한국과 러시아 간에 갑자기 국경이 형성되고 1861년 4월에는 이민법을 아무르 주와 연해주에 공포하였다.

그 법에 따르면 새로 편입한 영토에 이주하는 자는 국유지를 자유로 선정해 약 100헥타르까지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인두세(人頭稅)는 물론 10년간 병역면제와 20년간 농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이민법은 물론 러시아인을 극동으로 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 수교(修交)국가인 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봉금지대가 해제되어 그곳에 간 일부 초기 소수의 이주민은 그 혜택을 받기도 하여 함경도 지방에 흉년이 겹치고 농경지가 부족한 실정이라 곧 소문을 듣고 러시아로 한인의 집단 이주가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sup>13)</sup>

1912년 러시아 외무성의 전권위임을 받고 실시한 조사보고서에는 극동한인은 1863년 이전부터 블라디보스톡과 남우수리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한인 첫 러시아 이주자는 1860년 북경조약 이후 1863년에 13세대가 뽀시예트(Посъет) 지역에 이주를 시작한 다음 매년 증가한 통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64년에는 60세대<sup>14)</sup>, 1868년에는 165세대, 1869년에는 766세대, 1884년에는 1,164세대 총 5,447명이었다. 이렇게 한인 이주민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연해주에는 러시아인보다 한인이 더 많아졌다.<sup>15)</sup> 러시아는 한인이

1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사회주의정치사 문서보관소, 이하 ГАСПИ), Фонд 495, Опись 135, Дело 122, Л.10.

14)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이하 АВПР И), "한인 러시아 이민원년(元年)". Ф.148. Оп487. Д.714. Л.Л. 1-3.

15) В.В. Граев(그라베),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Японцы в Приморье, Отчет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МИД, Спб, 1912, с.129.

모국국경 인접지역에만 밀집해 거주하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황인종인 점을 고려해 유럽 지역 여러 국가에서 범(汎) 슬라브계나 백인 이민을 장려시키고, 대신 한인을 한·러 국경에서 먼 아무르 지방 등 노동력이 개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분산 이주 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sup>16)</sup>

그래서 러시아는 1871년에는 두만강 러시아 국경 쪽의 한인 이주민을 아무르(Амур)주의 농지개간과 국경인접지역의 인구분산책으로 500명을 최초로 이주시켰다.<sup>17)</sup>

한편 구 한국정부는 러시아로 많은 한인이 빠져나가자 러시아에 지방관리를 시켜 자주 항의를 하게 하였다. 뒤늦게 1884년에야 한·러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양국은 이주민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1888년 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1884년 이전에 간 이주민만 이민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후부터 가는 이주민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18)</sup>

그러나 러시아는 앞서 1888년도에 한·러 간에 합의한 한인 이주민에 관한 협정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황무지 개간을 위해 1884년 이후의 이주민이나 새로 간 이주민도 추방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구 한국정부의 증명을 소지한 자에게는 단기간 체류를 허가하고 1개월 이상 원하면 수수료(5루블)를 받고 임시 거주증명을 교부해 주어 체류를 연장시켜 주었다.<sup>19)</sup>

이렇게 되어 구 한국정부에서 금하고 있던 불법 이주는 계속 연해주에 증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러·일 전쟁(1904-1905)으로 일본이 구 한국을 점령하고 외교권을 약탈당한 후부터는 노동력이 필요한 이웃지방이며 정치적으로 러·일 전쟁 전에 구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였던 관계로 독립운동가

16) С.Д. Аносов(아노소프), Корея 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 1928, с. 5-6.

17) Ким Сын Хва(김승화),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1965, с. 31; ГАС ПИ, Фонд, 4950, Опись 135, Дело 16, Л.Л. 6-8.

18) АВПР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2, Л.Л. 131-134.

19) АВПРИ, Фонд, 148, Опись 487, Дело 1089, Л.Л. 14.

를 포함한 일반 노동자들의 이주가 더욱 급격히 연해주에 집중되었다.

1929년 구 소련시대에 비교적 엄격하게 널리 실시한 블라디보스톡 인구 조사 통계에서 처음으로 1849년-1910년까지 한인 이주실태를 말하고 한인이 연해주 인구의 반 가까이 차지하였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러·일 전쟁 이후 1906년에 아무르 총독<sup>21)</sup>으로 율페르베르게르(Улуперберг П.Ф.)가 임명되면서부터 개간 우선정책을 시행하였던 전임 총독과는 달리 한인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백인계(白人係) 러시아인 이민을 장려하면서 한인 이주민 문제는 현안문제가 되어 갔다. 그는 “러시아 인에게 개간(開墾)이 힘든 토지를 한인에게 분배시켜 주려는 이민 관리정책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극동지역이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와 같이 한인만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한인이라 할지라도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1906년과 1907년에 황제(皇帝)에게 다음과 같은 상주서(上奏書)를 올렸다.

- 1) 아무르 연안 여러 주에는 러시아인을 이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인들이 광범한 지역을 점령하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황인종(黃人種)의 침략에 대항하려면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켜 온갖 종류의 방해에 직면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인은 러시아 국적을 받고 러시아 정교회(正教會)에 입교해서도 러시아인에 전혀 동화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행동한다. 러시아에 그런 한인이 많으면 유익하지 못하며 청국(淸國)이나 일본(日本)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유해한 분자로 변할 수 있다.
- 3) 한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벌써 유감스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러시아인은 농지를 한인에게 임대해주고 지주(地主)로 행세하며 슬

20) Г.Ткачев(뜨까체프), Иммиграц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Журнал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4, Москва, 1994, с.98.

21) 아무르 총독부는 이전에 동부 시베리아 총독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884에 신설되어 1917년까지 연해 주, 아무르 주, 캄차트카 주, 바이끼갈 주, 사할린 주를 관할하였다.

에 취해 놓고 있다.<sup>22)</sup>

결국 1908년 운페르베르게르는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총독부 소재지)에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아무르 총독산하 각 주지사, 상공인 대표와 지주(地主)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황인종 문제와 한인문제가 주의제가 되어 논의되었다.

극동에서 한인의 농지임대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포시예트(Посыет)지방의 러시아인 거주지 8개 마을과 한인거주지 2개 마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한인 마을은 스스로 경작하고 있으나 8개 마을의 러시아인은 한인에게 소작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에서는 한인에게 농지임대를 금하는 입법을 제정해야 하며, 개인사업체나 국영기업체에서 노동하는 대부분의 황인종(한인) 노동자를 감원시키며, 일본과 한·러 국경지방에서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국적 한인을 연해주 북쪽 블라가베셴스크(Благоवेशенск) 지방이나 혹은 노동력이 필요한 아무르 주로 분산 이주시켜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하바롭스크 회의를 삐체르부르그 에서도 지지하였다. 1909년 국가위원회와 두마(Дума=국회)에 의해서 아무르 총독부 관할지역에서 외국인의 채용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률은 1910년 6월 1일 황제가 제가 해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자는 정부의 청부업이나 납품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고용과 국유지 임대나 양도를 금하게 하였다.<sup>23)</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한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귀국하려고 하는 낄팍팔이 일꾼으로 임시 거주증명뿐인 신분이었으므로 아무르(Амур=흑룡강) 총독 관할지방에서 추방하고 가급적이면 슬라브계 이민을 장려하고 동양계 러시아국적 한인은 두만강 국경에서 떨어진 연해주 북쪽이나 아무르 주로 분산 이주시키려는 정책을 입법화해 공

22) АВПРИ.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94. Л.Л. 7-12.  
23) В. Цесоцкий (체소츠키), Корей 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연해주의 한인문제), СПб, 1926, с. 137.

식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였다.

### 3. 한인의 독립운동과 러·일 관계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황제의 퇴위와 1910년 한·일 합방 전후에 러시아 극동에서 러·일 전쟁 때 러시아군과 연맹으로 싸웠던 전 간도(間島) 관리사 이범윤(李範允)을 위시해 연해주를 근거지로 한 여러 한인독립운동 단체의 항일투쟁이 두만강 국경지방에서 격화되었다. 이즈음 러시아는 러·일 전쟁(1904-1905)에서 패하고 혁명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겹쳐 불가피 일본과 화해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정부도 러시아와 전후 평화를 환영하면서 1908년 베제르부르크 주재 일본 대사관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한인 빨치산 활동을 우선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24)</sup>

일본은 1905년 포츠머스(Portsmouth) 러·일 평화조약 2조에 근거, “러·일 양국은 한·러 국경지방에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군사행동도 자제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한인의 국경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1908년 4월 일본 외상은 한인 폭도 활동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러시아 외무성에 항의하였다.

“이범윤(李範允)이 러시아 노보끼예스끄(Новокиевск, 두만강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한인을 이주시킨 후 폐허가 되었다)에서 반도 700여명을 소총으로 무장시켜 러시아 군 막사에서 러시아군 장교단에 의해 훈련을 받고 간도를 거쳐 한국에 침투하는데 러시아가 협조를 하고 있다.”<sup>25)</sup>

24) АВІРИ. Фонд 148. Опись 487. Дело 767. Л.Л. 1-126 ; 박종효, 『한국일보』, 1995년 8월 1일.

25)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이하 문서요약집』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p. 244. 이범윤 - 간도관리사였던 그는 武裝權이 있었으며 러·일 전쟁 때는 그의 산하에 2,500명에 달하는 의병대와 함께 마패(馬牌)를 휴대하

이 항의에 대하여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끼(Извольский А.П.)는 아무르 지방 총독대리 육군 중장 마르토프스(Мартоc)에게 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과 우호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어서 각료회의 의장(수상) 스톨의벤(Столыпин П.)도 마르토프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러시아 국경에서 항일 활동을 금지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라. 만일 필요하다면 한인 이주민 지도자들을 국경 인접지역인 노보끼예스끄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하라.”<sup>26)</sup>

이와 관련 연해주 지사의 지시를 받은 우수리(Уссури, 烏蘇里)지방 국경 행정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Е.Т.)는 연해주 현역군 지사에게 “이범윤과 그의 일당 40~50명은 러시아를 떠나 중국 훈춘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연해주가 넓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만주의 전 국경을 경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무장 단체가 간도(間島)를 경유 대한제국으로 잠입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sup>27)</sup>

사실 1908년 3월 말 이범윤과 전 대한제국 근위대 김인수 대령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 고종황제가 퇴위를 당한 후 격분하여 국경 행정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sup>28)</sup>와 러·일 전쟁(1904-1905) 때 북한에 진주하여 러시아 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범윤 의병대(필자 주: 義兵隊=약 2,500명)와 연맹(聯盟)을 형성해 같이 일본군에 대항하던 아니시모프(Анисимов) 동부 시베리아 보병 2사단장을 찾아갔었다. 그들은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이 체결

고 북한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연맹으로 일본군과 싸우다가 포츠머스 러·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 군과 같이 철군했다.

26)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러시아 국립 극동역사문서 보관소, 이하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10. Дело 327. Л.Л. 2-4об.

27)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3. Дело 1160. Л.23.

28) 스미르노프는 우수리 국경행정관으로 내무성 소속, 경흥 영사를 겸직하고 연해주 지사대리 역임.

된 다음에 러시아군과 같이 약 250-700명(이범윤은 2,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스미르노프는 250명에서 700명으로 추정)의 의병대를 대동(帶同)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철수할 때 회수당한 무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러나 스미르노프와 아니시모프는 러·일 간에는 이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든 한인 빨치산들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와 일본간에 불화를 조성시키지 말고 만주로 독립운동 기지를 옮기라고 요구하면서 무기반환을 거절하였다.<sup>29)</sup>

1908년 7월에 일본 정부는 또 다시 한인 폭도들이 국경을 통해 구 한국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동경주재 러시아 대사 말렙스끼-말레비치(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ц)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범윤이 200명의 폭도를 규합 친일 대한제국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노보끼예프스끄(Новокиевск)에 집결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대한제국에 침투하고 있다.

이 항의에 말렙스끼-말레비치 대사도 아무르 총독 운페르베르게르에게 전문으로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폭도를 지원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한인 독립운동 음모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때 명령을 하달받은 연해주 주지사 플우그(Флуг В.Е)는 일본에 대한 러·일 전쟁 때의 적개심이 남아 있어 적극적으로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를 탄압하지 않고 있었다.<sup>30)</sup>

당시 연해주에는 이범윤 외에도 전 의정부 참찬(參贊)을 지낸 이상설(李相高)이 소위 한·일 을사보호조약(乙巳條約)의 무효를 주장하고 1906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이범윤과 함께 블라디보스톡 한인촌(韓人村)과 간도(間島) 등지에서 항일 활동을 하다가 1907년 고종 황제의 헤이그(Hague) 특사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영국과 미국을 거쳐 다시 돌아와 1908년부터 항일 활동을 재개하였다.<sup>31)</sup> 또 유림(儒林)의 거두며 단발령(斷

29)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3. Дело 1160. Л.4.

30) АВПРИ. Фонд 133. Опись 470. Дело 176. Л.Л.1-96.

31) АВПРИ.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1969. Л.Л.1-32 ; 박중효 편역, 『문서요약집』, p. 339.

鬚)을 반대해 한때 국내에서 3,000명의 의병을 거느렸던 유인석(柳麟錫), 전 대한제국 군이 해산된 후 의병활동을 하고 있는 홍범도(洪範圖), 이민 1세인 러시아 국적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 최재형(崔在亨), 그리고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블라디보스톡과 노보끼예스끄를 거점으로 항일 활동을 하고 있어 한인이 많이 사는 전 우수리 지방은 항일 독립 운동의 해외 본거지가 되어 있었다.<sup>32)</sup>

이런 한인 독립운동 활동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연해주와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송병준(宋秉峻)이 수찬(Сучан)에서 1909년 3월부터 일진회(一進會)의 분회를 공의회(公議會)라는 명칭으로 가장시켜 이주 한인을 포섭하고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연해주 한인 중 공의회 회원은 앞장서 한인 빨치산 활동을 비방(誹謗)하고 의병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첩보도 수집하여 일본에 제공하였다.<sup>33)</sup>

이 공의회에 한인 18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특히 극동 러시아 영토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친일 교사(敎唆)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공의회 회원들의 밀고(密告)로 블라디보스톡 일본 영사관은 한인 독립운동자의 동태를 잘 파악하여 러시아 당국에 한인 빨치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벌을 요구해 그 일부는 만주로 추방되고 일부는 투옥당하기도 하였다.<sup>34)</sup>

이때 안중근(安重根)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재상 꺼깁쵸프(Кокорцов)와 함께 아무르 군관구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던 초대 조선통감을 역임한 이토(伊藤博文)를 브라우닝(Browning)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경악과 함께 이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

32) Б.Д. ПАК(보리스 박), *Корей 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ркутск, 1994, с.148.

33) 『위의 글』, p. 162.

34) АВПРИ. Фонд 148. Опись 487. Дело 770. Л.Л.36-611.

첫째, 이토(伊藤)는 친 러시아 인사였다.

둘째, 이토의 하얼빈 여행은 러·일 간의 친선 수립이 목적이었다.

셋째, 이토의 총살이 러시아 재무상 켄잡초프(Кокорцов) 면전에서 행하여졌다는 것 등이었다.<sup>35)</sup>

이 사건이 있는 후 러시아 측은 한인 이민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하지만 안중근의 의거는 한인의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로 발전하여 연해주에서 군소 수개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이 통합하고 친일 공의회(일진회)에 대항하기 위해 1910년 7월 8일 연해주 암밤비(Амбамби)에서 150명의 대표가 회합하여 창의소(필자 주: 倡義所=의병 무력단체)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sup>36)</sup>

창의소 의장은 이범윤, 13도 의병 도(都) 총재(摠裁)는 유인석, 군사교관에는 이상설 그리고 지도부에는 이범윤, 이상설, 김좌두, 홍범도, 안한주, 이기풍, 이범석(초대 한국 전국무총리) 등이 포함되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최초로 해외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의 총 본산이 되었다.<sup>37)</sup>

창의소 창립총회에서 이전에 분산되어 활동하던 의병 부대를 통합시킨 것 외에도 행동강령을 정하여 13도에 단원을 파견하여 항일운동에 전 애국 세력의 단합을 촉구하고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봉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를 공의회 등을 통하여 입수한 일본정부는 1910년 8월 25일 뻬쨌르부르크 주재 일본 대사 모또노(本野)를 시켜 한·일 합병(1910년 8월)후 한인 의병대의 내습을 예방하려고 러시아 정부에 러시아 내에 거주하는 한인 특히 극동 한인들의 폭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일본인의 생명, 재산에 한인들의 폭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5) РГВИА(러시아 국립 군역사문서보관소). Фонд 2.000. Опись 1. Дело 4134. Л.Л.1-319 : 박중효 편역, 『문서요약집』, p. 668.

36) ГАРФ(러시아 연방 문서보관소). Фонд 102-00, 1910. Дело 210. Л.7.

37)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10. Дело 326. Л.64.

러시아 정부는 이 요청에 현실적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어 일본 대사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내무성에서는 빼제르부르크와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일본 대사관이나 혹은 일본 거류민에게 반일(反日)적인 행위에 대처하는 사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빼제르부르크 시장과 연해주 지사에게 하달하였다.<sup>38)</sup>

이 명령으로 1910년 8월 30일 블라디보스톡 경찰은 42명의 한인 독립운동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독립운동의 노익장 유인석(柳麟錫), 이상설(李相高), 이범석(李範奭) 등이 포함되었다. 만주에서 돌아온 이범윤(李範允)도 1910년 10월 22일 체포되었다.

체포 소식을 듣고 서울 일본 조선총독부는 러시아 연해주 당국에 일본에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러·일 전쟁 이후 대한제국 내의 한인 친러파 계보의 노출을 꺼려 러시아는 아무르 총독의 지시로 앞서 체포된 사람 중 7명과 이범윤을 9월 말일에 조·러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이르쿠츠크의 보다이보(Бодай бо)로 추방하였다.<sup>39)</sup>

그 후 일본은 또 다시 1915년 빼제르부르크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외무성에 2차로 구두통문을 전 달하고 항일운동지도자의 추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동휘(李東輝), 강순기, 계봉우, 이종 호, 안정근, 이강, 이위중, 홍범도, 엄인섭 등 30명의 명단을 제시하였다.<sup>40)</sup>

러시아는 이제 한·러 국경지대에서 한인 빨치산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극동 한인을 러·일 간에 다 같이 장애로 생각하게 되었다. 연해주(沿海州) 주지사도 한인의 자유로운 행동은 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어 사실상 극동에서 한인은 러·일 양국이 다 기피하는 요주의 대상이 되어갔다.

이제 항일 운동 지도자뿐 아니라 항일운동의 활동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인거주지를 국경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이주시키는 문제가

38) АВПРИ.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210. Л.48.

39) РГИА ДВ, Фонд 1, Опись 10, Дело 326, Л.Л.74-79.

40) АВПРИ, Фонд 148, Опись 487, Дело 767, Л.Л.1-126 : 박중효 편역, 『문서요약집』, p. 59.

다시 제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혁명전야의 혼란으로 이주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1917년 혁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 4. 구 소련 제정 러시아의 한인 이주정책 계승

1917년 러시아에 혁명이 발생하자 극동에서는 연합국(Антанта=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중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이 1918년에 백군(白軍)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 약 7만명, 미군 약 1만명을 블라디보스톡에 상륙시켜 혁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미군은 얼마 동안 있다가 곧 철수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극동 여러 지방을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유럽에서 극동안전지역으로 수송하던 황제의 황금 수송열차도 급습하여 강탈하여갔다.

다급해진 레닌(Ленин В.И.)은 극동에서 유럽지역으로 일본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완충(緩衝)지대로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1920-1922년)을 신설하여 간섭주의(干涉主義)자들이 더 이상 유럽 러시아 방향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책을 세웠다.<sup>41)</sup> 극동공화국을 설립하여 유럽러시아로 더 이상 일본의 침투를 차단하고 코민페른(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национал, 필자 주: 외무인민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자금지원, 한인의 대부분이 소련국적 아니기 때문) 한인 극동부를 설치해 일본에 적개심이 강한 한인들에게 일본과의 투쟁을 선동하면서 혁명이 성공하면 조국의 독립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였다. 때문에 많은 한인 청년들은 극동의 혁명운동에 적극가담하고 적군(赤軍)과 함께 앞장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백군(白軍)을 소탕하는데 앞장서 싸웠다.<sup>42)</sup>

41) П.М. Никифоров(니끼포로프), Записки премьера ДВР(극동공화국 수상의 기록), 1917-1922гг., Москва, 1963, с. 219. 극동공화국의 수도는 바이칼 주 울란-우데(Улан-Уде)에 두었으며 바이칼 주, 아무르 주, 연해 주, 캄차트카 주, 북 사할린 주가 포함되었다.

42) РГВИА(러시아 군문서 보관소). Фонд 1874. Опись 32. Дело 42. Л.3-13. 고려혁명군. (당시

또 한인 청년들만으로 한인 혁명군 여단(필자 주: 여단장 오하목, 군사위원 이동휘, 서류상에 공식명칭은 고려혁명군 여단)과 포병대 그리고 사관학교(필자 주: 교장 李靑天)까지 창설하였다.<sup>43)</sup>

그러나 마침내 1922년에 일본이 연해주에서 철수하자 여러 한인 빨치산 단체와 한인 혁명군은 해산시키고 극동 공화국도 해체해서 1922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다시 편입시키고 말았다.

소련은 일본이 철수한 다음에 1925년 소·일 협정에서 포츠머스 조약을 재확인하고 두만강 국경의 안정과 대일 평화정책을 추구하면서 다시 국경지대의 한인에 대하여 제정 러시아 때의 이주정책과 노동력 활용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한인 373명은 노동력이 필요한 유럽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부두 건설과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탄광과 우크라이나 공화국 하리코보에 수백명씩 강제로 동원해 이주시켰다.<sup>44)</sup>

그 밖에도 집단농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내세워 국경지대에 밀집해 거주하던 무농지 한인을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개간이 필요한 블라고베셴스크(Благовешенск) 등지의 북쪽 지방으로 약 1만여 명을 이주시켰다.<sup>45)</sup>

당시 소련에서 1924년에 조사한 통계로는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

소련 거주 한인들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고려라는 국호를 즐겨 사용하고 혁명에 가담하였으며 백군과 일본군을 토벌한 후에 조국의 해방전도 지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 사실 내전이 끝난 이후 외무 인민위원 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은 중단되었으나 고려혁명군에 관계하고 있던 이동휘(李東輝)가 레닌과 모스크바에서 회담 후 이 목적을 위해 금화를 받아 상해로 수송 중에 일부를 약탈당하기도 하였다. 그 지금으로 임시정부의 이승만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계열로 개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러시아에 있었다. 해산된 고려혁명군 일부는 금광노동자로 보내졌다.

43) РГВИА(러시아 군역사 문서보관소). Фонд 1874. Опись 32. Дело 42. Л.Л.1-16.

44) ГАРФ(러시아 연방문서 보관소). Фонд 130. Опись 4. Дело 150. Л.6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791.

45) 심현용, 「강제이주 발생 메커니즘과 민족관계 특성연구: 소련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1999, p. 203.

은 약 150,000명에 달하였으며 거주지는 지방별로는 다음과 같았다.

- 1) 총 한인은 약 147,000명으로 70%가 이민 1세였다.
- 2) 극동지방 ..... 약 140,000명
- 3) 시베리아 ..... 약 3,500명
- 4) 우랄 ..... 약 2,800명
- 5) 모스크바 ..... 약 500명
- 6) 레닌그라드 ..... 약 200명

상기 지방 외에도 한인은 러시아 공화국 내 여러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 우즈베키스탄, 까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에도 한인 이주민이 있었으나 정확한 인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주로 극동지방에 다수가 거주하였다.<sup>46)</sup>

또 한인 일부는 혁명기에 중앙아시아의 따쉬켄뜨(Ташкент)에 이주해가 고려인 노동자연맹 따쉬켄뜨 지부를 결성(1924년)하고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고려인 노동자 연맹의 일원으로 벼농사 등을 경작하였다.<sup>47)</sup>

소련은 극동에서 반혁명세력이 완전히 진압되고 특히 대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처음 1922년 고려혁명군을 그리고 다음에 고려인 연맹도 1926년에 폐쇄시키고 동년(同年) 다음과 같은 한인 이주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 1) 한·러 국경에서 북위 48도 5분선 이내의 우수리 지방과 하바롭스끄(Хабаровск)시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에게는 농지 분배를 금지한다.

46) ГАРФ. Фонд 1235. Опись 119. Дело 12. Л.Л.61-62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9.

47) ГАРФ. Фонд 8356. Опись 1. Дело 17. Л.Л.1-13(따쉬켄뜨지부). 고려인 노동자 연맹 지방지부는 1924년도에 14개로 출발하여 1926년도에 폐쇄될 때에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끼예프, 무르만스끄, 따쉬켄뜨 등 총 58개의 지방 지부를 두고 중앙집행위원장은 홍근표였다. 연맹본부 주소는 Москва, Ул.Грузинская 45/2로 소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1926년도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폐쇄시켰다.

- 2) 현재 이 지역에서 농지 분배를 받지 못한 한인 이주민은 거주지 규정에 의해 하바롭스끄 외곽 48도 5분선 이북이나 블라고베셴스끄(Благовещенск) 지방으로 이주시킨다.
- 3) 이주민이 현재 점유한 농지는 앞으로 3년 내에 그 소유권을 박탈한다.
- 4) 농경지가 부족한 지역의 한인 이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
- 5) 한인 이주민이 농지를 선점하고 후에 신고하는 행위를 금한다.
- 6) 앞으로 한인 이주민에게 이민법을 적용한다.<sup>48)</sup>

상기 1)항과 2)항에서 밝히고 있는 북위 48도 5분 선은 지도를 펼쳐 보면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전략적인 면을 고려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앞서 일본이 1918년부터 1922년 10월까지 연해주 일대를 침입해 유린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북위 48도 5분선 이내에 있는 연해주 우수리 지방은 다시 일본군이 동해와 만주에서 공격해 오면 퇴로가 막혀 병목현상이 형성되게 되고 한인과 그 거주지 영토를 일본에 넘겨주는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려는 대책이었던 것 같다.

그 경우 연해주에 남겨진 한인은 대다수가 소련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일본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일본국민으로 일본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한인 거주지역을 아무르 총독 운뎀베르케르가 지적하였듯이 한인이 대다수인 우수리지방을 통제 일본에 넘겨 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3)항에서 이민자가 점유한 농지는 3년 내에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주를 1930년경에 실시하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示唆)하였다.

1928년 6월 12일에는 소련 극동집행위원회 산하 소수민족협력국에서 “한인 이주실시와 안정대책”이 논의되고 고려인의 이주는 집단농장의 기금이 조성되는 데로 지방마다 수년 내에 따로 실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48) “소련방 중앙집행위원회 최고회의 회의록(1926년 12월 26일)”,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797.

이즈음 러시아 극동(1926-1927년)에서 한민족은 전체인구 중 3위를 차지하는 큰 민족분포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한인은 스스로 농지를 찾아 이주하여 갔었으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유럽에서 러시아 정부의 이주 지원금과 농지를 배정받고 온 이주민이었다.

- 1위 : 러시아인(1,174,915명)
- 2위 : 우크라이나인(315,203명)
- 3위 : 한인(162,366명)
- 4위 : 중국인(80,137명)의 순서였다.<sup>49)</sup>

1929년 8월에는 극동지방 집행위원회 간부회의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인접지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남부 연해주의 농지이용을 제한하고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끄 남부지방에 농지제공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다음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1) 국경수비대는 특히 한카(Ханка) 호수(湖水)에서 두만강(豆滿江)까지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불법이주민을 추방한다.
- 2) 블라디보스톡 지방의 한인은 1929년부터 1933년에 걸쳐 꾸르다르긴(Курдартгин) 등지로 이주시키되 쏘베트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자는 제외한다. 상기 기간에 이주를 거부하는 자는 농업이민법 위반자로 처벌한다.
- 3) 이주는 가장 늦게 온 자부터 실시하고 블라디보스톡 지방에서는 한인에게 농지임대를 금지하며 불법적인 농지임대는 처벌한다.
- 4) 새로 국경을 넘어오는 한인에 대한 보고와 감시책임은 농업조합에 위임하고 불법이주자가 적발되면 농촌 쏘베트 의장을 문책한다.
- 5) 한인에게 시베리아와 내륙지방으로 이주의 필요성과 이주 시에는 정부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한다.<sup>50)</sup>

49) ГАРФ. Фонд 1235. Опись 120. Дело 60. Л.Л.13-158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793.

50) ГАРФ. Фонд 1235С. Опись 2. Дело 359. Л.Л.3-4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p. 795-796.

위와 같이 소련은 우선 소련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부터 이주계획안을 수립했었으나 막대한 이주 기금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 시행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이에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 첩보본부는 1909년부터 한인 거주 지역에 일진회를 잠입시켜 공의회를 조직해 친일 활동을 시켰듯이, 또 다시 한인 친일공작원을 파견하여 꾸준히 극동 한인사회에 일본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서울, 하얼빈, 북경 3곳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한인 여성을 포함한 첩보요원을 집중적으로 극동한인 거주지역에 파견하고 지하 친일공작활동을 시켰다.<sup>51)</sup> 그리고 실지 일본은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1905년 체결한 이후에도 한인의 러시아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단체를 설립하여 남 우수리 지방으로 떠나는 한인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물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러시아로 망명하는 사람이나 또 1919년 3·1운동 후에 구 소련으로 떠나는 한인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한인이 떠난 지방에는 대신 일본인을 이주시켰다. 그리고 한인이 정착해 개척한 신 이주지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 일본의 간접침략공작에 대하여 소련도 이미 제정 러시아 때 아무르 총독이 예상한 대로 러시아가 일본이나 청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한인의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믿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때는 적의 간첩소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맥락(脈絡)에서 국경인접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sup>52)</sup>

## 5. 중·일 전쟁과 한인 특별 이주

1937년 7월 북경(北京) 근교에서 중·일 전쟁(中·日 戰爭)이 발생하면서

51) 일본의 극동 첩보는 서울, 하얼빈 그리고 북경에서 파견하였다.

52)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191.

소련은 긴장하여 일본의 다음 침략 목표가 극동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갑자기 1937년 8월 21일 극동 국경지방의 한인 이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폴란드 인접 국경지방에서 폴란드계 인들을 이주시킨 것과 같이 한인 이주도 국경지방에서 전시를 대비해 소개 시키려고 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4일 후부터 두만강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한인 일본간첩 용의자를 검거하기 시작하였다.<sup>53)</sup> 혁명 후 이미 한인 민족지도자는 거의 숙청되고 처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감과 집단이주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에 내통하고 협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당시 구 소련방 공산당 총서기 스탈린과 소련방 인민위원회 의장(수상) 몰로토프(Молотов В.) 공동 명의로 된 한인 특별 이주에 관한 성명서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무조건 전부 기만적인 것이라고 거부하는 냉전시대의 회의적 자세로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성명서에 극동 한인을 대상으로 침투하는 일본간첩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한다.

- 1) 전 소련방 공산당 극동위원회, 극동공산당 집행위원회, 그리고 극동내무 인민위원회는 극동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을 이주시킨다.
- 2) 이주는 즉시 시행하며 1938년 1월 1일경까지 완료한다.
- 3) 이주자에게 이주시 가계도구, 농기구 등을 갖고 갈수 있도록 허용한다.
- 4) 이주자가 남기고 가는 동산, 부동산 및 파종한 농작물은 평년 수확가격으로 보상한다.
- 5) 한인 이주자가 희망할 경우 국경통과 제도를 간소화시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6) 내무인민 위원 부(내무성)는 한인이 이주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난폭한 반항과 무질서한 행위를 방지한다.
- 7)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인민위원회(내각)는 즉시 이주지역을

53) Ли В.Ф. и Ким Ен Ун(리 블라지미르, 김영웅), Белая книга(백서), Москва, 1992, с. 101.

정하고 이주민에게 필요한 원조를 하며 신 거주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을 세운다.

- 8) 교통 인민위원 부(교통성)는 극동 집행위원회의 한인 이주민과 생활도구의 운송을 위한 계획에 따라 극동에서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행 열차를 적기에 배차해야 한다.
- 9) 전(全)소련 공산당 극동위원회와 극동집행 위원회는 이주민원과 이삿짐을 3일 이내에 보고한다.
- 10) 이주를 실시하면서 출발 인원, 이주지에 도착한 인원, 외국으로 나간 인원을 10일 간격으로 전화로 보고한다.
- 11) 한인 이주지역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3,000명의 국경 경비대를 증원한다.
- 12) 소련방 내무 인민위원 부(내무성)에 한인이 떠난 지방에 대신 국경수비대의 배치를 위임한다.<sup>54)</sup>

상기 결의서 중 5)항은 형식에 불과했으며 외국으로 떠났다는 어떤 보고서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명의 한인이 당시 만주를 거쳐 모국으로 어렵게 탈출하는데 성공해 강제이주로 발생한 소련의 비인도적 행위를 서울신문에 폭로하여 일본은 소련의 한인 강제이주 사건을 반소(反蘇)선전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 6. 특별 집단이주 시행과 신 거주지 수용실태

한인 집단이주를 발표하면서 1937년 8월 24일 소련방 내무인민 위원(내무상) 예조프(Ежов)는 까자흐스탄 공화국 내무인민 위원 잘린(Залин)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무인민 위원 자그보진(За гвоздин)에게 다음과 같은 지

---

54) Ли В.Ф. и Ким Ен Ун(리 블라지미르, 김영웅), Белая книга(백서), p. 64: 박종효, 이 알렉, 『Книга памяти (회상의 기록)』, Москва, 1996, с. 24.

시를 하였다.

첫째, 이주민에게 가장 좋은 거주지를 제공하고 한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 둘째, 한인 이주민의 다른 지방으로 탈출을 예방하는 행정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이주민 관리기관을 강화해 일본이 근동(近東) 국가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서 한인과 연락을 취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와 첩보활동을 확대하라.

그리고 예조프는 한인 공산당원과 공산청년 동맹원 또 문화기관도 동시에 이주민과 같이 출발하도록 하였다. 까자흐스탄에는 한글신문, 인쇄소(印刷所) 그리고 사범대학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다.<sup>55)</sup> 하지만 한인 문화기관이나 사범대학은 이주지 현지 인민위원회(정부)가 폐쇄시켜 다음해에 까자흐스탄으로 옮겼다.<sup>56)</sup>

이주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주민 수송이었다. 한 수송 열차에 의무(醫務)차량 1량과 의사가 동행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으나 실제 이주를 실행하면서 단기간 내에 완료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실무기관에서는 무리한 열차배정을 하고 많은 의료요원을 동원할 수 없었다. 35~45일이 수송이 소요되는 중앙아시아의 신 이주지까지 이주민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축용 화물 열차 등에 이삿짐처럼 싣고 밖에서 문을 폐쇄해 정착 시에도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주 도중에 열차에서 많은 병약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주민 수용지(收容地)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까자흐스탄에서는 소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른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이주민 생활안정에 위협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sup>57)</sup> 이주민을 수송한 대다수 지방에서는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55) ГАРФ. Фонд 5451. Опись 20а. Дело 509. Л.Л.1-12. 교육대학 학장은 김홍엽(Ким Хон Еб)이었으며, 교수 12명, 학생 169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 갔으나 우즈베키스탄 교육인민위원 부에서 한인만의 별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바로 이주된 해에 폐쇄시키고 학생과 교사들을 우즈베키스탄 대학 등에 편입시켰다. 까자흐스탄에서 1938년에 학교와 문화시설을 지원해 다음해 옮겼다.

56) ГАРФ. Фонд 5446. Опись 22а. Дело 50. Л.Л.1-116,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2.

57) ГАРФ. Фонд 5446. Опись 29. Дело 48. Л.Л.3-26;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799.

지내다가 이주 당한 당년 겨울에는 문명과는 먼 원시시대의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부둥켜안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이주를 계속시켜 1937년 10월 25일경에는 124개(열차 편) 집단으로 구분하여 36,442세대, 총 171,781명을 이주시켰다. 다만 극동에 남은 한인은 캄차트카(Камчатка)와 아호뜨까(Охо тка)에 특별 이주시킨 700명이 남아 있으나 11월 1일경에 열차배정이 되어 있었다.<sup>58)</sup>

이 지역도 역시 일본과 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이주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의 러시아 영토 “점령계획”이란 지도에 캄차트카에서부터 나호뜨까까지 전 소련 극동 해안지대가 포함되어 있어 취해진 조치였던 것 같다.

마침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16,272세대 76,525명 까자흐스탄 공화국에 20,170세대 95,256명을 이주시켰다.<sup>59)</sup>

그러나 1945년도 소련방 한인 인구조사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74,500명, 까자흐스탄에는 46,000명, 그리고 툴라(Тула) 주(洲)와 모스크바 주(洲)에는 1,000명으로 나타났다.

까자흐스탄으로 이주당한 한인의 인원수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주지가 척박하여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등 친척을 따라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한인은 여러 내륙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살았다.

## 7. 이주민 생활대책과 이주 보상금 지급

극동에 두고 간 농민의 재산과 이주비용 지급 실태는 1937년 9월 5일 소련

58)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59) 리 블라지미르·김영웅, 『Белая книга(백서)』, c.85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p. 805-807.

방 인민 위원회 의장(내각 수상) 몰로토프가 서명한 법령은 다음과 같았다.

- 1) 한인 집단농장의 재산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평가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과중한 곡물을 연평균 수확량으로 계산하여 규정된 수매가로 정산한다.
- 2) 한인 집단농장의 채무가 있으면 농기계 트랙터 배급소의 현물과 현금 그리고 재산평가에서 남은 잔금으로 상환한다.
- 3) 정산결과 집단농장이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과 은행 당좌 적립금은 이주지로 이관한다.
- 4) 집단농장과 자영농(自營農)의 부동산은 보험가격, 가금(家禽)은 규정된 매입가격에 준하고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불한다.
- 5) 한인 이주자 의 가축은 육류가공 공장이 인수하고 차후 거주지에서 현물로 보상한다.
- 6) 한인의 이주비로 소련방 인민위원회(내각)의 예비비에서 1,200만 루블을 극동지방 집행 위원회에 미리 지급한다.
- 7) 고려인 이주 에 소요되는 경비를 3일 이내에 산정(算定)하여 소련방 내 무인민위원 부(내무성)에 제출한다.<sup>60)</sup>

9월 11일 소련방 인민위원회는 극동거주 한인의 이주비로 연방 인민위원회 예비금으로 62,800만 루블을 책정하고, 준비금으로 이미 지급한 1,200만 루블 외에 극동지방 집행위원회는 1,000만 루블,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750만 루블의 선금을 소련방 재무인민위원 부(재무성)에 신청을 지시하고 한인 한세대당 평균 이주 보상금 6,000루블을 책정하였다.<sup>61)</sup>

그러나 농지, 주택, 식료품, 학교건립, 과종계획, 보건시설 등을 현지 집행 기관에 위임하여 여러 가지 부정이 발생하였다. 소련방 인민위원회 의장 몰로토프가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회(내각)에 보낸 전문에서 그 실정이 잘 들

60) ГАРФ. Фонд 5446. Опись 7. Дело 497. Л.Л.29-49.

61) ГАРФ. Фонд 5446. Опись 57. Дело 52. Л.Л.31-41 :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0.

어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주한 한인들이 비참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과 물자는 무계획적으로 낭비하여 이주자들의 고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고 올바른 조차를 취하고 1938년 1월 1일 이전까지 농민, 어민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안정 계획서를 제출하라.”<sup>62)</sup>

까자흐스탄에서도 실정은 같았다. 소련방 정부에서 이주보상비와 생활대책비가 앞서 지출되었으나 1937년 12월 중순까지 한인이 극동에 남기고 온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sup>63)</sup> 마침내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회의는 1938년 7월 17일자 결의에서 “한인들의 생활 안정 대책은 부진한 상태다. 최근 인민의 적으로 들어난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회 의장(수상) 시기자예프(Сигизаев)를 비롯 토지 인민위원 부(토지성=농업성)의 아이뜨매토프(Айтметов)와 알리에프(Алиев)는 한인 이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소홀히 하고 토지인민위원 부의 하부 기관에 형식적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농지, 주택, 학교 건립, 보건시설 감독과 관리를 등한히 하였다.”

상기 인민의 적(敵)은 소련방 인민위원회(내각)의 지시로 “우즈베키스탄인과 한인간에 불화를 조성한 책임을 물어 숙청시킨다”고 하였다.<sup>64)</sup>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킨 집단농장소속 9,807세대를 제외한 남은 16,307세대의 정착 사업은 1938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민(漁民) 700세대 중에 아랄(Арал)과 발흐쉬(Балх ш) 어업집단농장에 정착시킨 400세대만이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주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도 소련방 인민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938년 1월)

62)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0.

63)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p. 799-800.

64)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2.

- 1) 어민이 극동에 남기고 간 재산을 담보로 농업은행이 보상금 26,500,000 루블을 3년 만기로 어업집단농장 중앙본부에 대출을 허가한다.
- 2) 대출은 어민의 재산평가 액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고 이 재산의 실물가치를 감안해 지급한다.
- 3) 한인 어민이 남긴 모든 재산은 대신 들어온 어업집단농장에 이관하거나 혹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한다.
- 4) 어업집단 농장 중앙본부는 대출금을 어업집단농장이 새로운 이주지에서 어선과 어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어민당 어업 복구비 1,000루블과 2,600만 루블의 재산보상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실물가격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sup>65)</sup> 이주시킨 직후 식료품은 소련방 토지인민위원회(농업성)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민에게 공급한 3,000톤이 실제로 2,997톤만 인계되었으며 이주민에게는 2,363톤 밖에 공급되지 않고 도중에 650여 톤은 지방 관리들이 착복하였다. 특히 이주대책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건축분야로 이주민 주택 건설은 1938년 7월이 되어서야 착수하였다.<sup>66)</sup>

이와 같이 이주민 수용대책은 소련방 정부에서 지급한 이주비와 식료품을 이주민을 수용한 현지 공산당 간부들이 착복하여 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을 초래시켰던 것이다. 소련방 정부에서는 이주비용을 포함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극동에 두고 온 재산평가가 과소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민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 8. 맺 음 말

러시아 극동지방에 거주하던 한인 특별이주(강제이주)에 관한 제정 러시

65) 박중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4.

66) 박중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3.

아와 구 소련 시대의 정책은 크게 분류해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있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한인 이주민이 모국국경 인접지대에 대다수가 거주하는 것이 혹 중국이나 일본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같은 황인종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국경지방으로부터 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내륙지방으로 일부 이주시키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외적인 요인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침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는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사건(1895년) 이후부터 러·일 전쟁(1904-1905) 때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의 침략적인 야욕에 맞서 구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이 구 한국을 점령하자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간도(間島) 관리사 이범윤(李範允)이 지휘한 의병대(義兵隊) 약 2,500명이 러시아군과 연맹으로 함경도에서 일본군에 항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1905)이 체결되고 북한에서 러시아 군이 철수하자 의병대도(250-700명=러시아 측 문서)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인 이주민도 일본의 수탈과 탄압이 심해지면서 앞서 흉년이 겹쳐 먼저 개척지 우수리지방에 이주해 간 사람을 따라 매년 이주민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국이 그리워 멀리 떠나지 못하고 가까운 두만강 바로 너머에 있는 노보끼예스끼(두만강에서 부르면 들리는 지역)를 중심으로 우수리지방에 집중적으로 정착하여 마치 우수리는 구 한국의 일부분같이 되었다.<sup>67)</sup>

한편 러시아가 구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였던 관계로 지원을 받고 이범윤을 비롯한 안중근(安重根), 홍범도(洪範圖-창의 대장), 이범석(李範奭=초대 국무총리), 이상설(李相高 = 헤이그 특사), 이동휘(李東輝=상해 임시정부 총리) 같은 독립운동지도자들이 그곳에 집결하여 해외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의 무력단체인 창의소(倡義所)를 조직하고 한인 거주지를 거점으로 국경을 넘

67) ГАРФ. Фонд 3316. Опись. 6. Дело 37. Л.116.

나들며 항일 무력투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본격적인 항일 독립투쟁에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양국은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군사시설과 군사행위금지)을 들어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인 빨치산 활동 금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사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면서 지도자 이범윤 등을 연해주로부터 추방시키고 한·러 국경지대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폐쇄해 한인을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시행을 하기 전에 혁명이 발생하고 말았다.

러시아 혁명정권은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에 혁명을 저지하려고 상륙한 일본 간섭군(干涉軍)을 격퇴시키고 백군을 소탕(掃蕩)하기 위해 한인에게 항일독립투쟁을 선동하여 선봉에 서서 일본군과 싸우도록 하였다. 한인 고려혁명군 여단을 비롯 여러 한인 빨치산 단체는 일본군과 백군을 상대로 큰 전공을 세웠으나 일본군이 1922년에 철수하고 백군도 괴멸하자 혁명정권은 한인 무장단체를 해산시키고 소위 노동자·농민의 무산계급 정권을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으로 한인 중에서 반혁명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1925년에는 소·일(蘇·日)조약에서 다시 1905년 제정러시아와 일본간에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을 확인하고 1928년에 전 제정 러시아가 취했던 것 같이 두만강 국경선의 안정과 대일 평화정책을 추구하면서 인구밀집 지역이 된 우수리 국경지대로부터 한인을 내륙지방으로 연차적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금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 와중에 중·일 전쟁(1937)이 갑자기 발발하자 구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일본의 다음 침공대상이 소련 극동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경경비의 강화가 절박한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경지대는 주로 한인이 점유하고 있고, 한인 항일 의병지도자들은 쏘베트 정권 초기에 반혁명분자<sup>68)</sup>로 숙청했거나 만주로 탈출해 남은 한인은 대부분은 러시아 국적

68) 한인의 반혁명분자로 처형된 정확한 인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대략 2,500 ~ 4,000명으로

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국민으로 일본과 내통하고 침공하면 부역(附逆)할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구 소련 스탈린 정권의 이와 같은 한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결국 따쉬 겐트 한인이 기후조건이 맞아 주 농산품인 벼 재배를 하고 있어 일본과의 접경지역에서 먼 극동으로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련방의 까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이주적지로 선정하고 중·일(中·日) 전쟁이 발생한지 한달 만에 급히 극동거주 한인들을 일시에 그리고 집단적으로 한·러 국경지대는 물론 전 극동에서 소개(疏開)<sup>69)</sup>시키기로 전격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급조해 이주시킨 이주민에게 현지 수용대책도 전혀 준비되지 않아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주시킨 다음에도 한인에게는 여행을 제한하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독일도 일본의 동맹국)시에는 징병(徵兵)에도 제외시켜 후방 노무대(勞務隊-노무군)로만 소집한 것은 일본이 한인파 근동국가(近東國家)를 통해 내통을 염려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 소련 스탈린 정권 시대의 1937년 극동 한인의 특별이주는 일본식민지 국민으로 분류되어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특히 전체주의적 이념(理念)을 우선시하며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통제하던 일당 공산주의 체제에서 군사 전략만을 고려해 국경지대로부터 일시에 강제 소개(疏開)시킨 비인도적 이주 정책이었던 것이다.

#### <학계 의문사항에 대한 필자 견해>

##### 1\*) 2차 대전에 한인 참전? : 제 2차 대전 때 한인은 군입대를 거부당했다.

다만 소련은 전시에 고아를 군부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고아들도 병영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소수의 한인 고아가 예외적으로 병영에서 성장한 덕분에 현역으로 입대한 예가 몇 사람 있다.

---

알려져 있다. 죄명은 일본간첩, 마약, 절도, 매점매석, 강간 등이었다. 그러나 성분검사에서 공산주의 건설에 반혁명적 인사는 유산계급출신, 일본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 일본, 구 한국, 중국에 여행을 비밀히 했거나 자주 한 사람도 간첩죄를 적용했었다.

69) 박종효 편역, 『문서요약집』, p. 807.

2\*) **한인 이주민이나 이민이냐?** : 이민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강제 이주 시에 전체의 70%에 달한 한인은 이민이 아니다. 나라 없는 이주민이었다. 이들 대 다수는 구 한국이 발행한 증명서와 일본관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낱팜팔이 일꾼으로 개척지에 돈을 벌러 갔다가 귀국을 못해 이들 중 약40%가 러시아 연인을 부인으로 맞았던 것이다.

3\*) **1864년 러시아 이민원년?** : 러시아의 행정상으로는 이민원년으로 볼 수 있으나 모순이 있다. 1)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1860년 청국으로부터 할양 받기 이전에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적인 터전이었으며 망국의 땅을 지키고 소수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는 여러 기록이 러시아 국립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연해주 일부는 한인이 토착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2) 러시아에서 국적을 1864년이 아닌 1881년부터 한인에게 발급해 주었으며 구 한국에서는 불법 월경(越境)을 한 범법자로 보았다. 구한국은 1888년에 가서야 한·러 간에 1884년 이전에 이주해간 한인을 인정하고 1884년 이후에 러시아에 간 이주민은 귀국시키기로 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할 때 합의 하였다.

4\*) **한인 강제이주는?**: 러시아 국적이 없는 한인 임시거주자의 70%는 명백히 나라 없는 한인이다. 그들은 비인도적 불법인 강제이주를 당했다. 1884년 이전에 간 이주자는 약 4000여명에 불과 했으므로 소련국적 한인은 4000명이다. 후에 국적취득 허가도 귀국 시키기로 한 조약 위반이었다.

5\*) **고려인 호칭?** :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공산주의 계열에서 일제 시대에 널리 사용하던 호칭이다. 고려 여성동맹, 고려청년동맹, 재 일본 고려청년회 등.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시대의 영향 때문에 소련시대는 물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대한독립군, 대한 임시정부 등 대한이란 호칭을 사용하였다.

(원고투고일 : 2007. 5. 22, 심사완료일 : 2007. 8. 10)

주제어 : 강제이주, 탄압정책, 이주정책, 중앙아시아 한인, 스탈린 체제

<ABSTRACT>

##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ctuality of Deportation of the Koreans in Far East Area by Ex-Soviet Union

Park, Chong-hyo

The Ex-Soviet Union executed unexpectedly the massively deportation for the approximately 170,000 Koreans who were living in the Far East of the Soviet to the Central Asia in 1937, which caused extravagantly casualties to the Koreans. After collapse the Ex-Soviet Union, the new-born Russian Government enacted the reinstatement law, and regarded the deportation as the non-humanitarianism oppression policies with causing many deportation form interior and exterior.

There are not many facts explained that the historical reasons about the deportation of the Koreans to the Central Asia. Thus in this paper, the its reason and the truth about the deportation will be ascertained.

The intial immigration of the Koreans to the Far East Area was executed in 1860 due to poor harvest and the lack of farming lands. In addition, fighter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common people who were could not bear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and Japanese Plundering Policies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numerous and rapidly emigrated to the area.

The emigration people to the Far East Area resided densely along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where was the opposite side of the *Tuman* River without forgetting their country. With bringing the Soviet's attention about the phenomena, the Soviet executed initially the Koreans living in the boundaries area the deportation to the northern cultivation area in the Far East where was needed many labors. Those kinds of the removal policies related the Imperial

Russia and the Soviet had two reasons.

First, as the interior factor, the Imperial Russia estimated that the dense emigration to the Far East Area of the Koreans could badly influenced to the Russia as the same yellow races in case of occurring war either China or Japan. Thus the Koreans were removed to the northern cultivated part in the inland area. The Soviet also was emigrated the Koreans as the almost same estimation to the northern cultivated part in the inland area where were needed to labors.

Second, as the exterior factor, Japanese threat and protest were executed the policies. Japanese request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as using as a strongpoint should close and the fighters for independence of Korea should be ba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ssian-Japanese *Portsmouth Treaty*(1905), which was agreed about the prohibition of military actions along the boundaries along the *Tuman River*. Accordingly, The Soviet Union announced that the Koreans living in that area would annually move from international boundaries to inland area.

In the meantime, the China-Japan War broke out in July 1937, the Russia felt the threats, and announced the measures for for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hurriedly planned the removal by regal force to the inland area. But Stalin suspicioned that the Korean people would secretly communicated with Japanese as the people of Japanese Militarism. Stalin announced and executed the deportation as one of policies for the totalitarian of communist, but he had not proper plan for reception.

Key Words : Deportation, Oppression Policies, Deportation Policies,  
The Koreans Living in the Central Asia, Stalin's Control System